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7. 5. 22.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4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7년 5월 1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7.5.18)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배 상필)

가. 제안이유

- 소식지의 제호에 관한 존치·변경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제호가 선정됨에 따라 소식지 제호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2조중 “내고장 영등포로” 를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로 개정
(안 제2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로 개정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3. 專 門 委 員 的 檢 討 報 告 要 旨 (전문위원 김완섭)

- 구민들로부터 그 제호인 “내고장 영등포”란 명칭 조정의견이 있어 소식지 제호에 관한 존치·변경 공모를 통하여 “내고장 영등포”를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함.

○ 다만,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제7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사로 붙여 쓰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편집위원회”로 붙여 쓰고, 제7조 제2항 중 “4인이상 8인 이내”를 “4인 이상 8인 이내”로 띄어 쓰고, 제7조 제3항과 제8조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7조 제4항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는 “남은 임기로”로 하고, 제8조 제5호 중 “기타 반회보”를 “그 밖에 소식지”로 하고, 제11조 제3항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완납시까지”를 “완납 때까지”로 하고,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으므로 “부 칙”은 “부칙”으로 붙여 쓰고, “날로부터”는 “날부터”로 수정의견임.

4. 審査結果：原案 可決

※ (자구정정내용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구정정 내역

구분	자구정정 전	자구정정 후
제7조제1항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u>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편 집위원회</u>
제7조제2항	<u>4인이상 8인 이내</u>	<u>4인 이상 8인 이내</u>
제7조제3항	<u>각호의 1</u>	<u>각 호의 어느 하나</u>
제7조제4항	<u>잔임기간</u>	<u>남은 임기</u>
제11조제3항	<u>기한 내-----완납시까지</u>	<u>기한 내-----완납 때까지</u>
부칙	<u>날로부터</u>	<u>날부터</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
----------	----

제출년월일 : 2007. 5.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소식지의 제호에 관한 존치·변경 설문 조사 결과 새로운 제호가 선정됨에 따라 소식지 제호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2조중 “내고장 영등포로”를 “영등포 행복소식으로”로 개정
(안 제2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2007년도 예산 반영
- 입법예고 : 생략
 - 생략사유 : 소식지 제호에 관한 존치·변경 설문조사, 제호 공모 등은 이미 인터넷, 소식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였기에 입법예고를 생략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호)중 “내고장 영등포로”를 “영등포 행복소식으로”로 한다.

제12조(위원수당 등)제1항 내지 제2항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조와 조 제목은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제호) 소식지의 제호는 “<u>내고장영등포</u>”로 한다.</p>	<p>제2조(제호) -----“<u>영등포 행복소식</u>”으로 -----.</p>
<p>제12조 (위원수당 등) 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 대하여서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u>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위원수당 등) ① ----- ----- -----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 -----.</p>
<p>②소식지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u> 원고료 등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p>	<p>② ----- -----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